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

제출년월일 : 1999년 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따라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개정하고자함.

- 수입증지 판매신청시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
- 수입증지 판매신청시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하던 것을 폐지함.
- 수입증지 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할때와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판매해제시 종전의 1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것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였음.

2. 주요골자

가. 판매인지정 신청을 수입증지 판매에관한 계약체결로개정 (안 제9조제1항)
나. 삭제 (제9조제2항)
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것을 2일전으로 개정(안제11조제1항 및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필요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1항중 "300원권,500원권"을 "300원권,400원권,500원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판매인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하고,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판매인으로 지정"을 "그 계약을 체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한다.

①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신청)"을 "(계약의 신청 및 고시)"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서류"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로, "도보"를 "군보"로, "신고"를 "고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10일"을 각각 "2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지정을 취소"를 "계약을 해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판매인"으로 한다.

제14조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로 한다.

제17조중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판매인이"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승계지정을"을 "판매인의 승계를"로,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정"을 각각 "계약"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4">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td><td>처리기간
20일</td></tr>
<tr><td rowspan="2">판매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판 매 소
설치 장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수입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td><td>점 포 명</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 판매소 약도 ></td></tr>
<tr><td colspan="5">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평창군수입증지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평 창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통</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지의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는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 권으로 한다.	제5조(증지의종류, 규격 및 모양) ①----------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7조(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제7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①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한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 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중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그 계약을 체결------.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제9조(판매인 지정신청) ① 판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계약의 신청 및 고시) ①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서류----------.
②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장(이하"이사장 " 이라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하며 이사장이 산하직장금고에 증지청구 및 수명을 위임할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을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한다.	< 삭제 >
③삭제	
④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 교부를 받을 군명을 도보에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군보----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판매인의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유발생예정10일전에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1조(판매인의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① ----------2일----------.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2일---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을 해지----------.
② 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판매인----------.
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이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17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인이----------.
제25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인의 승계를----------계약의 해지----------.
②~③(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가 수입인지 판매인지정(수입인지에관한법률제4조)
-수입인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

나 수입인지 판매인의 요건(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함.

다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수입인지 판매 신청시 인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제도폐지

라 수입인지 판매인의 의무(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5호)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할때에는 종전의 10일전까지 통보에서 2일전까지로 완화.

마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수입인지에관한법률제4조)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나 신고제로 완화.

바 수입인지 판매인의 요건(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매가능토록 완화

사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수입인지에관한시행규칙제5조)
-수입증지판매신청시 인감계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제도폐지

마 수입인지 판매인의 의무(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5호)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해제시 10일전까지 제출토록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